

[200 세외수입] [220 임시적세외수입] [222 순세계잉여금]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
장 · 관 · 항	목			
200 세외수입		10,988,172		
	220 임시적세외수입	10,988,172		
	222 순세계잉여금	10,068,047		
	222-01 순세계잉여금	10,068,047	○ 순세계잉여금	= 10,068,047
	223 이월금	920,125		
	223-01국고보조금 사용잔액	517,709	○ 국고보조금사용잔액	= 517,709
	223-02시도비보조 금사용잔액	402,416	○ 시비보조금사용잔액	= 402,416
300 지방교부세		4,000,000		
	310 지방교부세	4,000,000		
	311 지방교부세	4,000,000		
	311-01 지방교부세	4,000,000		

[300 지방교부세] [310 지방교부세] [311 지방교부세]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
장 · 관 · 항	목			
			○ 부동산교부세	= 4,000,000
400	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	33,482,448		
	410 조정교부금	33,482,448		
	411 조정교부금	33,482,448		
	411-01 조정교부금	33,482,448	○ 재원조정교부금	= 33,482,448
500	보조금	54,810		
	510 국고보조금등	46,885		
	511 국고보조금등	46,885		
	511-01 국고보조금	46,885	○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 보급	= 16,800
			○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	= 30,085
	520 시도비보조금등	7,925		
	521 시도비보조금등	7,925		

[500 보조금] [520 시도비보조금등] [521 시도비보조금등]

과 목	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
장 · 관 · 항		목			
		521-01 시도비보조금등	7,925	○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	= 3,299
				○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총조사	= 4,626
기획감사실 계			48,525,430		

[500 보조금] [510 국고보조금등] [511 국고보조금등]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
장 · 관 · 항	목			
500 보조금		48,335		
	510 국고보조금등	14,380		
	511 국고보조금등	14,380		
	511-01 국고보조금	14,380	○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지원	= 14,380
520 시도비보조금등		33,955		
	521 시도비보조금등	33,955		
	521-01 시도비보조금등	33,955	○ 선거관리 경비	= 22,863
			○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	= 11,092
총무과 계		48,335		

[200 세외수입] [220 임시적세외수입] [228 잡수입]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
장 · 관 · 항	목			
200 세외수입		9,000		
	220 임시적세외수입	9,000		
	228 잡수입	9,000		
	228-09 기타잡수입	9,000	○ 연수한마당 광고료	= 9,000
500 보조금		18,000		
	520 시도비보조금등	18,000		
	521 시도비보조금등	18,000		
	521-01 시도비보조금등	18,000	○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인건비	= 18,000
주민자치과 계		27,000		

[200 세외수입] [210 경상적세외수입] [211 재산임대수입]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
장 · 관 · 항	목			
200 세외수입		324,350		
	210 경상적세외수입	156,350		
	211 재산임대수입	119,700		
	211-01 국유재산임대료	15,000	○ 국유재산 임대료	= 15,000
	211-02 공유재산임대료	104,700	○ 공유재산 임대료 ○ 토지대부료 ○ 청사사용료	= 4,700 = 100,000
	212 사용료수입	30,150		
	212-08 기타사용료	30,150	○ 대강당, 대회의실 대관료	= 30,150
	216 이자수입	6,500		
	216-01 공공예금이자수입	3,500		

[200 세외수입] [210 경상적세외수입] [216 이자수입]

과 목			예 산 액	산 출 기 초
장 · 관 · 항	목			
				○ 일반회계관리자금 이자수입 = 3,500
		216-03 기타이자수입	3,000	○ 세입세출외현금관리자금 이자수입 = 3,000
220	임시 적세외수입		168,000	
	221 재산매각수입		75,000	
		221-01 국유재산매각수입	50,000	○ 국유재산 매각수입 = 50,000
		221-02 공유재산매각수입	25,000	○ 공유재산 매각수입 = 25,000
	228 잡수입		89,000	
		228-01 불용품매각대	10,000	○ 불용품 매각수입 = 10,000
		228-02 변상금	7,000	○ 국 ·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= 7,000

[200 세외수입] [220 임시적세외수입] [228 잡수입]

과 목	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
장 · 관 · 항	목				
		228-09 기타잡수입	72,000	○ 청사임대부분관리비	= 72,000
		229 과년도수입	4,000		
		229-01 과년도수입	4,000	○ 변상금 및 대부료	= 4,000
500 보조금			15,200		
	520 시도비보조금등		15,200		
		521 시도비보조금등	15,200		
		521-01 시도비보조금등	15,200	○ 국유재산 관리경비	= 15,200
재무과 계			339,550		

[100 지방세수입] [110 지방세] [111 보통세]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
장 · 관 · 항	목			
100 지방세수입		15,868,000		
	110 지방세	15,868,000		
	111 보통세	14,237,000		
	111-03 면허세	321,000	○ 목표액	= 321,000
	111-05 재산세	13,916,000	○ 목표액	= 13,916,000
	112 목적세	1,175,000		
	112-03 사업소세	1,175,000	○ 목표액	= 1,175,000
	113 과년도수입	456,000		
	113-01 과년도수입	456,000	○ 목표액	= 456,000
200 세외수입		4,789,307		

[200 세외수입] [210 경상적세외수입] [213 수수료수입]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
장 · 관 · 항	목			
	210 경상적세외수입	4,785,807		
	213 수수료수입	955,307		
	213-01 증지수입	955,307	○ 목표액	= 955,307
	215 징수교부금수입	3,266,000		
	215-01 징수교부금수입	3,266,000	○ 목표액	= 3,266,000
	216 이자수입	564,500		
	216-01 공공예금이자수입	564,500	○ 목표액	= 564,500
	220 임시적세외수입	3,500		
	228 잡수입	3,500		
	228-05 채납처분수입	3,500	○ 목표액	= 3,500

[500 보조금] [510 국고보조금등] [511 국고보조금등]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
장 · 관 · 항	목		
500 보조금		21,920	
	510 국고보조금등	21,920	
	511 국고보조금등	21,920	
	511-01 국고보조금	21,920	○ 표준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사업비 = 21,920
세무과 계		20,679,227	

[200 세외수입] [210 경상적세외수입] [212 사용료수입]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
장 · 관 · 항	목			
200 세외수입		155,469		
	210 경상적세외수입	6,841		
	212 사용료수입	2,041		
	212-08 기타사용료	2,041	○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	= 2,041
	213 수수료수입	4,800		
	213-04 기타수수료	4,800	○ 민원서비스혁신사업(G4C)및 인터넷전자민원수수료	= 4,800
220 임시적세외수입		148,628		
	228 잡수입	97,628		
	228-04 과태료수입	97,628	○ 호적과태료	= 6,720
			○ 주민등록과태료	= 69,408
			○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	= 500

[200 세외수입] [220 임시적세외수입] [228 잡수입]

과 목	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
장 · 관 · 항	목				
				○ 부동산중개업과태료	= 1,000
				○ 국토이용관리법과태료	= 20,000
		229 과년도수입	51,000		
		229-01 과년도수입	51,000	○ 개발부담금	= 50,000
				○ 부동산중개업과태료	= 1,000
민원지적과 계			155,469		

[200 세외수입] [220 임시적세외수입] [228 잡수입]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
장 · 관 · 항	목			
200 세외수입		2,000		
	220 임시적세외수입	2,000		
	228 잡수입	2,000		
	228-09 기타잡수입	2,000	○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장비용 징수	= 2,000
500 보조금		38,531,558		
	510 국고보조금등	19,871,434		
	511 국고보조금등	19,871,434		
	511-01 국고보조금	19,871,434	○ 기초생활보장급여	= 12,714,531
			○ 근로소득공제	= 155,066
			○ 자활근로	= 1,428,564
			○ 자활후견기관운영	= 127,873
			○ 긴급복지지원사업	= 310,286

[500 보조금] [510 국고보조금등] [511 국고보조금등]

과 목			예 산 액	산 출 기 초
장 · 관 · 항	목			
				○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사업 = 655,257
				○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= 150,000
				○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= 36,000
				○ 저소득층학생 수능공부방 지원 = 6,000
				○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= 10,000
				○ 보육사업 = 1,751,430
				○ 보육시설 기능보강 = 219,075
				○ 재가모부자가정 지원 = 200,057
				○ 경로연금 = 750,120
				○ 사할린동포 입소시설 운영지원 = 642,300
				○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= 72,471
				○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 = 322,450
				○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= 319,954
	520	시도비보조금등	18,660,124	

[500 보조금] [520 시도비보조금등] [521 시도비보조금등]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
장 · 관 · 항	목			
	521 시도비보조금등	18,660,124		
	521-01 시도비보조금등	18,660,124	○ 기초생활보장급여	= 1,589,316
			○ 근로소득공제	= 19,383
			○ 자활근로	= 178,570
			○ 자활후견기관운영	= 27,401
			○ 긴급복지지원사업	= 38,786
			○ 시설보호자간식비	= 221,560
			○ 자활후견기관종자사 장려수당	= 10,800
			○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운영지원	= 120,000
			○ 사회복지관 종사자 장려수당	= 82,950
			○ 시설수용입원환자 간병비	= 16,800
			○ 푸드뱅크사업지원	= 21,000
			○ 지역봉사	= 13,672

[500 보조금] [520 시도비보조금등] [521 시도비보조금등]

과 목	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
장 · 관 · 항	목				
				○ 일반사회복지지원(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공익인건비)	404,074
				○ 사회복지관운영	= 597,942
				○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	= 180,000
				○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사업	= 272,166
				○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	= 150,000
				○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	= 282,020
				○ 저소득장애인 생활신문보급	= 9,060
				○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임대료	= 14,400
				○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	= 22,225
				○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	= 150,000
				○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	= 56,668
				○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	= 400,800
				○ 장애인복지관 운영	= 772,000

[500 보조금] [520 시도비보조금등] [521 시도비보조금등]

과 목			예 산 액	산 출 기 초
장 · 관 · 항	목			
				○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= 80,200
				○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= 60,000
				○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= 72,000
				○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= 28,333
				○ 장애인체육관 운영 = 56,000
				○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= 1,819,727
				○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= 77,684
				○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= 17,000
				○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= 40,000
				○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운영지원 = 11,200
				○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 지원 = 9,000
				○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= 18,000
				○ 저소득층학생 수능공부방 지원 = 3,000
				○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= 22,300

[500 보조금] [520 시도비보조금등] [521 시도비보조금등]

과 목			예 산 액	산 출 기 초
장 · 관 · 항	목			
				○ 국내입양가정 양육비 지원 = 31,200
				○ 아동복지사업 = 368,419
				○ 공부방 학습교구비 지원 = 6,000
				○ 결식아동 확대 급식비지원 = 426,600
				○ 보육사업 = 875,715
				○ 보육시설 기능보강 = 109,537
				○ 보육시설 운영지원 = 304,300
				○ 보육아동지원 = 134,400
				○ 지역사회 보육상담실(육아지원센터) 운영지원 = 6,667
				○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운영 = 25,800
				○ 장애아통합시설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= 5,000
				○ 노후보육시설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= 4,000
				○ 재가모부자가정 지원 = 50,014
				○ 모자보호시설(육신모자원) 운영 = 195,139

[500 보조금] [520 시도비보조금등] [521 시도비보조금등]

과 목			예 산 액	산 출 기 초
장	관	항 목		
				○ 경로연금 = 225,036
				○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= 148,106
				○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 = 324,700
				○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 = 15,000
				○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= 319,954
				○ 무료 이.미용봉사단 운영 = 1,200
				○ 저소득 노인 목욕비 = 17,640
				○ 경로교통수당 = 723,439
				○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= 713,300
				○ 경로당 운영지원 = 135,405
				○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= 71,500
				○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= 96,221
				○ 노인건강진단 = 1,620
				○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 = 200,000

[500 보조금] [520 시도비보조금등] [521 시도비보조금등]

과 목			예 산 액	산 출 기 초
장 · 관 · 항	목			
				○ 재가노인복지사업 = 200,888
				○ 노인 봉사형 일거리 지원 = 5,040
				○ 무료 및 실비 노인복지시설 운영 = 4,594,227
				○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지원 = 30,000
				○ 경로당 개보수 = 20,000
				○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 장비구입 = 5,000
				○ 경로당(생활집기) 기능보강 = 3,000
				○ 재가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 = 50,000
				○ 무료급식소 개보수 및 장비보강 = 8,000
				○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활동지원 = 38,000
				○ 저소득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= 17,400
				○ 저소득모부자가정 초등학생학용품비 = 14,400
				○ 저소득모부자가정 중고생 학습비 = 28,700
				○ 저소득모부자가정 월동대책비 = 5,000

[500 보조금] [520 시도비보조금등] [521 시도비보조금등]

과 목			예 산 액	산 출 기 초
장	관	항 목		
				○ 저소득모부가정세대주 건강검진비 = 1,500
				○ 저소득모부자가정 중고생 교통비 = 22,960
				○ 모자보호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 = 54,000
				○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= 60,060
사회복지과 계			38,533,558	

[200 세외수입] [210 경상적세외수입] [213 수수료수입]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
장 · 관 · 항	목			
200 세외수입		3,791,343		
	210 경상적세외수입	3,761,393		
	213 수수료수입	3,761,393		
	213-02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	2,979,253	○ 종량제일반봉투 판매대금	= 2,514,746
			○ 가정사업계봉투 판매대금	= 127,386
			○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대금	= 200,681
			○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판매대금	= 136,440
	213-04 기타수수료	782,140	○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	= 782,140
220 임시 적세외수입		29,950		
	228 잡수입	23,450		
	228-04 과태료수입	23,450	○ 무단투기 과태료	= 5,000

[200 세외수입] [220 임시적세외수입] [228 잡수입]

과 목	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
장 · 관 · 항	목				
				○ 사업장폐기물 위반 과태료	= 12,000
				○ 음식물류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	= 1,000
				○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위반과태료	= 2,000
				○ 1회용품 사용위반 과태료	= 2,450
				○ 오수분뇨법률 위반 과태료	= 1,000
		229 과년도수입	6,500		
		229-01 과년도수입	6,500	○ 무단투기 과태료	= 2,000
				○ 사업장폐기물위반 과태료	= 2,500
				○ 1회용품 사용위반 과태료	= 1,000
				○ 오수분뇨법률 위반 과태료	= 1,000
500	보조금		39,000		
	520 시도비보조금등		39,000		
	521 시도비보조금등		39,000		

[500 보조금] [520 시도비보조금등] [521 시도비보조금등]

과 목	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
장 · 관 · 항		목			
		521-01 시도비보조금등	39,000	○ 노면청소 차량 유지관리비	= 30,000
				○ 깨끗한거리 만들기 추진사업	= 9,000
청소과 계			3,830,343		

[200 세외수입] [210 경상적세외수입] [215 징수교부금수입]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
장 · 관 · 항	목			
200 세외수입		265,660		
	210 경상적세외수입	182,160		
	215 징수교부금수입	182,160		
	215-01 징수교부금수입	182,160	○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	= 182,160
220 임시적세외수입		83,500		
	228 잡수입	83,500		
	228-04 과태료수입	83,500	○ 환경관련법위반 과태료	= 7,000
			○ 운행차정밀검사 과태료	= 60,000
			○ 공중위생법위반 과태료	= 3,500
			○ 공중위생법위반 과징금	= 3,000
			○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	= 10,000
500 보조금		1,000		

[500 보조금] [520 시도비보조금등] [521 시도비보조금등]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
장 · 관 · 항	목			
	520 시도비보조금등	1,000		
	521 시도비보조금등	1,000		
	521-01 시도비보조금등	1,000	○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	= 1,000
환경위생과 계		266,660		

[200 세외수입] [210 경상적세외수입] [211 재산임대수입]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
장 · 관 · 항	목			
200 세외수입		27,832		
	210 경상적세외수입	18,732		
	211 재산임대수입	10,732		
	211-02 공유재산임대료	10,732	○ 구청사 6층 벤처기업 임대	= 10,732
	213 수수료수입	8,000		
	213-04 기타수수료	8,000	○ 농지 조성비 등	= 8,000
220 임시적세외수입		9,100		
	228 잡수입	9,100		
	228-04 과태료수입	7,900	○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	= 1,000
			○ 축산물 가공처리법 과태료 및 과징금	= 2,900
			○ 수산업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	= 4,000

[200 세외수입] [220 임시적세외수입] [228 잡수입]

과 목	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
장 · 관 · 항	목				
		228-09 기타잡수입	1,200	○ 푸른연수 LG카드 적립금	= 600
				○ 유기동물반환비	= 300
				○ 수산자원조성금	= 300
500 보조금			571,418		
	510 국고보조금등		65,920		
		511 국고보조금등	65,920		
		511-01 국고보조금	65,920	○ 쌀소득등보전직불제보조금	= 40,192
				○ 쌀소득등보전직불제 행정비	= 100
				○ 토양개량제 공급사업	= 1,448
				○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	= 480
				○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시술비	= 223
				○ 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운영	= 900

[500 보조금] [510 국고보조금등] [511 국고보조금등]

과		목	예산액	산출기초	
장·관·항	목				
				○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	= 700
				○ 지역실업자 직업훈련	= 21,877
	520	시도비보조금등	505,498		
	521	시도비보조금등	505,498		
		521-01 시도비보조금등	505,498	○ 공공근로사업 (분권)	= 229,748
				○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(분권)	= 1,960
				○ 공공근로사업 시설비	= 122,032
				○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	= 2,270
				○ 토양개량제 공급	= 181
				○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시술비	= 110
				○ 구제역, 가금인플루엔자 예방사업	= 1,020
				○ 유기동물관리비	= 8,000
				○ 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운영	= 450

[500 보조금] [520 시도비보조금등] [521 시도비보조금등]

과 목	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
장 · 관 · 항		목			
				○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	= 980
				○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	= 647
				○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 지원	= 3,000
				○ 우수농산물학교급식 지원	= 129,631
				○ 지역실업자 직업훈련	= 5,469
지역경제과 계			599,250		

[200 세외수입] [210 경상적세외수입] [212 사용료수입]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
장 · 관 · 항	목			
200 세외수입		141,400		
	210 경상적세외수입	86,400		
	212 사용료수입	86,400		
	212-08 기타사용료	86,400	○ 생활체육교실 수강료	= 86,400
220 임시 적세외수입		55,000		
	228 잡수입	35,000		
	228-04 과태료수입	35,000	○ 음.비.게임법 위반업소 과징금	= 25,000
			○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	= 10,000
	229 과년도수입	20,000		
	229-01 과년도수입	20,000	○ 음.비.게임법 위반업소 과징금	= 10,000
			○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	= 10,000

[500 보조금] [510 국고보조금등] [511 국고보조금등]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
장 · 관 · 항	목			
500 보조금		793,881		
	510 국고보조금등	86,068		
	511 국고보조금등	86,068		
	511-01 국고보조금	81,06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= 9,720 ○ 청소년수련활동지도인력배치지원 = 6,960 ○ 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비지원 = 5,000 ○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위원회 운영 = 2,000 ○ 청소년어울마당 = 5,000 ○ 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배치 = 48,600 ○ 생활체육교실 운영 = 3,788 	
	511-02국가균형특 별회계보조금	5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소년공부방 운영 = 5,000 	
	520 시도비보조금등	707,813		

[500 보조금] [520 시도비보조금등] [521 시도비보조금등]

과		목	예산액	산출기초	
장·관·항	목				
		521 시도비보조금등	707,813		
		521-01 시도비보조금등	707,813		
				○ 어르신체육활동 지원	= 4,860
				○ 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비지원	= 5,000
				○ 청소년수련활동지도인력배치지원	= 6,960
				○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위원회 운영	= 2,000
				○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	= 13,000
				○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	= 16,950
				○ 청소년종합상담센터지원	= 20,000
				○ 문화원사업비 지원	= 13,724
				○ 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 지원	= 15,000
				○ 능허대문화대축제	= 30,000
				○ 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배치	= 24,300
				○ 생활체육교실운영	= 4,419

[500 보조금] [520 시도비보조금등] [521 시도비보조금등]

과 목			예 산 액	산 출 기 초
장	관	항 목		
				○ 노인건강체조교실운영 = 1,600
				○ 군·구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= 50,000
				○ 어린이도서관 정보화시스템 구축 = 500,000
문화체육과 계			935,281	

[200 세외수입] [210 경상적세외수입] [211 재산임대수입]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
장 · 관 · 항	목			
200 세외수입		1,926,353		
210 경상적세외수입		547,625		
211 재산임대수입		6,625		
	211-02 공유재산임대료	6,625	○ 아암도 해안공원내 매점 임대료	= 6,625
212 사용료수입		391,000		
	212-01 도로사용료	381,000	○ 도로사용료	= 381,000
	212-02 하천사용료	10,000	○ 하천사용료	= 10,000
215 징수교부금수입		150,000		
	215-01 징수교부금수입	150,000	○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	= 150,000
220 임시적세외수입		1,378,728		

[200 세외수입] [220 임시적세외수입] [227 부담금]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
장 · 관 · 항	목			
	227 부담금	300,000		
	227-02 일반부담금	300,000	○ 도로굴착복구부담금	= 300,000
	228 잡수입	990,728		
	228-04 과태료수입	7,860	○ 도로법 및 건설관련법 위반 과태료	= 7,860
	228-09 기타잡수입	982,868	○ 아암도 해안공원 매점 전기사용료	= 5,508
			○ 공동구 관리비 및 사용료	= 977,360
	229 과년도수입	88,000		
	229-01 과년도수입	88,000	○ 도로 및 하천(구거)사용료 등 과년도징수분	= 88,000
500	보조금	1,218,500		
	520 시도비보조금등	1,218,500		

[500 보조금] [520 시도비보조금등] [521 시도비보조금등]

과		목	예산액	산출기초	
장·관·항	목				
		521 시도비보조금등	1,218,500		
		521-01 시도비보조금등	1,218,500	○ 청학동 553번지일원 도로개설	= 1,000,000
				○ 옥련동 능허대초교옆 도로개설	= 188,000
				○ GIS시설물 DB갱신비용 보조	= 10,000
				○ 2차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	= 20,500
건설과 계			3,144,853		

[200 세외수입] [220 임시적세외수입] [228 잡수입]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
장 · 관 · 항	목			
200 세외수입		110,000		
	220 임시적세외수입	110,000		
	228 잡수입	40,000		
	228-04 과태료수입	40,000	○ 건축법 이행강제금	= 40,000
	229 과년도수입	70,000		
	229-01 과년도수입	70,000	○ 건축법 이행강제금	= 70,000
500 보조금		17,033		
	510 국고보조금등	17,033		
	511 국고보조금등	17,033		
	511-01 국고보조금	17,033	○ 개발제한구역관리	= 17,033
건축과 계		127,033		

[200 세외수입] [210 경상적세외수입] [213 수수료수입]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
장 · 관 · 항	목			
200 세외수입		50,100		
	210 경상적세외수입	100		
	213 수수료수입	100		
	213-04 기타수수료	100	○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취급업무 수수료	= 100
220 임시적세외수입		50,000		
	228 잡수입	40,000		
	228-04 과태료수입	10,000	○ 광고물과태료	= 10,000
	228-09 기타잡수입	30,000	○ 교통사고등에 의한 수목훼손비 ○ 공원녹지 점용료	= 15,000 = 15,000
	229 과년도수입	10,000		
	229-01 과년도수입	10,000		

[200 세외수입] [220 임시적세외수입] [229 과년도수입]

과 목	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
장 · 관 · 항	목				
				○ 광고물과태료	= 10,000
500 보조금			806,907		
	510 국고보조금등		98,680		
		511 국고보조금등	98,680		
		511-01 국고보조금	98,680	○ 산불방지대책	= 1,500
				○ 산림병해충방제	= 4,687
				○ 숲가꾸기 사업	= 35,793
				○ 청학동 산55-10일원 사방사업	= 56,700
520 시도비보조금등			708,227		
	521 시도비보조금등		708,227		
		521-01 시도비보조금등	708,227	○ 도시개발사업	= 23,780
				○ 불법고정광고물 정비	= 46,000

[500 보조금] [520 시도비보조금등] [521 시도비보조금등]

과 목			예 산 액	산 출 기 초
장	관	항 목		
				○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= 20,000
				○ 문학산 사방 및 등산로정비사업 = 40,000
				○ 산불방지대책 = 1,050
				○ 산림병해충방제 = 1,606
				○ 보호수생육환경개선사업 = 10,000
				○ 숲가꾸기 사업 = 8,591
				○ 청학동 산55-10일원 사방사업 = 16,200
				○ 청학동 524번지일원 완충녹지 조성공사 = 541,000
도시관리과 계			857,007	

[200 세외수입] [210 경상적세외수입] [213 수수료수입]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산 초	
장 · 관 · 항	목			
200 세외수입		1,330,434		
	210 경상적세외수입	388,000		
	213 수수료수입	288,000		
	213-01 증지수입	288,000	○ 인증기사용수수료	= 288,000
	215 징수교부금수입	100,000		
	215-01 징수교부금수입	100,000	○ 교통유발부담금	= 100,000
220 임시적세외수입		942,434		
	228 잡수입	815,075		
	228-04 과태료수입	359,000	○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	= 150,000
			○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벌칙금	= 10,000
			○ 자동차무단방치벌칙금	= 15,000

[200 세외수입] [220 임시적세외수입] [228 잡수입]

과 목	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
장 · 관 · 항	목				
				○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	= 180,000
				○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	= 4,000
		228-09 기타잡수입	456,075	○ 불법주정차 견인대행 수수료	= 450,000
				○ 자동차 폐번호판 매각 수입	= 6,075
		229 과년도수입	127,359		
		229-01 과년도수입	127,359	○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	= 1,500
				○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	= 90,000
				○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	= 35,859
교통행정과 계			1,330,434		

[200 세외수입] [220 임시적세외수입] [228 잡수입]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
장 · 관 · 항	목			
200 세외수입		2,000		
	220 임시적세외수입	2,000		
	228 잡수입	1,000		
	228-04 과태료수입	1,000	○ 민방위교육 불참자 과태료	= 1,000
	229 과년도수입	1,000		
	229-01 과년도수입	1,000	○ 민방위교육 불참자 과년도 체납수입	= 1,000
500 보조금		30,050		
	510 국고보조금등	5,498		
	511 국고보조금등	5,498		
	511-01 국고보조금	5,498	○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	= 3,210
			○ 민방위 통,리대장 교육비	= 550

[500 보조금] [510 국고보조금등] [511 국고보조금등]

과 목	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
장 · 관 · 항	목				
				○ 중앙교육입교자 여비	= 235
				○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	= 593
				○ 인력동원 훈련보상금	= 910
	520	시도비보조금등	24,552		
	521	시도비보조금등	24,552		
		521-01 시도비보조금등	24,552	○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	= 3,745
				○ 민방위 통,리대장 교육비	= 642
				○ 중앙교육입교자 여비	= 274
				○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	= 691
				○ 방독면 구입	= 19,200
재난안전관리과 계			32,050		

[200 세외수입] [210 경상적세외수입] [213 수수료수입]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
장 · 관 · 항	목			
200 세외수입		178,524		
	210 경상적세외수입	169,024		
	213 수수료수입	168,854		
	213-01 증지수입	24,200	○ 건강진단결과서(제증명수수료)	= 24,200
	213-04 기타수수료	144,654	○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	= 654
			○ 진료수입	= 110,000
			○ 치아홈메우기 시술비	= 6,000
			○ 검사수수료	= 20,000
			○ 예방접종 수수료	= 8,000
	215 징수교부금수입	170		
	215-01 징수교부금수입	170	○ 항결핵보급수수료	= 170

[200 세외수입] [220 임시적세외수입] [228 잡수입]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
장 · 관 · 항	목			
	220 임시적세외수입	9,500		
	228 잡수입	9,500		
	228-04 과태료수입	9,500	○ 의료, 약사법 위반 과태료	= 8,500
			○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	= 1,000
500 보조금		1,767,232		
	510 국고보조금등	996,715		
	511 국고보조금등	996,715		
	511-01 국고보조금	996,715	○ 주요전염병관리 운영비	= 840
			○ 임산부, 영유아 건강증진	= 841
			○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	= 22,458
			○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	= 32,920
			○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	= 54,180

[500 보조금] [510 국고보조금등] [511 국고보조금등]

과 목			예산액	산출기초
장·관·항		목		
				○ 금연클리닉 = 122,585
				○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 = 73,250
				○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= 50,656
				○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= 9,750
				○ 알코올상담센터운영 = 59,500
				○ 노인의치보철사업 = 33,850
				○ 치아홈메우기 사업 = 3,000
				○ 심,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사업 = 2,844
				○ 방문보건사업비 = 821
				○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= 8,250
				○ 희귀,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= 188,400
				○ 저소득암검진사업 = 116,912
				○ 암환자 의료비 지원 = 70,674
				○ 보건소암예방관리사업 = 6,186

[500 보조금] [510 국고보조금등] [511 국고보조금등]

과 목	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
장 · 관 · 항	목				
				○ 성병 검진치료비	= 78
				○ 에이즈감염자등록관리비	= 360
				○ 불임부부 지원	= 114,760
				○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	= 23,600
	520 시도비보조금등		770,517		
	521 시도비보조금등		770,517		
		521-01 시도비보조금등	770,517	○ 주요전염병관리 운영비	= 840
				○ 구강보건실운영	= 3,000
				○ 임신부, 영유아 건강진단	= 631
				○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	= 16,844
				○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	= 24,690
				○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	= 27,090
				○ 금연클리닉	= 61,293

[500 보조금] [520 시도비보조금등] [521 시도비보조금등]

과 목			예 산 액	산	출	기	초
장	관	항 목					
				○ 주민건강증진센터운영	=		36,625
				○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	=		25,328
				○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	=		4,875
				○ 알코올상담센터운영	=		59,500
				○ 노인의치보철사업	=		16,925
				○ 치아홈메우기사업	=		1,500
				○ 심,뇌혈관질환 관리사업	=		1,423
				○ 방문보건사업비	=		410
				○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	=		4,125
				○ 임시예방접종사업	=		8,324
				○ 정신보건센터운영	=		30,000
				○ 치매센터 운영	=		133,100
				○ 치매상담센터 운영	=		2,500
				○ 희귀,난치성질환자의료비	=		94,200

[500 보조금] [520 시도비보조금등] [521 시도비보조금등]

과 목			예 산 액	산 출 기 초
장	관	항 목		
				○ 저소득암검진사업 = 58,456
				○ 암환자 의료비 지원 = 35,337
				○ 보건소암예방관리사업 = 3,093
				○ 불임부부 지원사업 = 57,380
				○ 산모.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= 2,950
				○ 성병검진 치료비 = 78
				○ 보건소 민원편의시설 및 노후장비 개선 = 30,000
				○ X-선 의료장비 등 구입 = 30,000
보건소 계			1,945,756	